



한국기업금융평가원

컨설팅 안내



중소기업 정책자금

■ 정의

우리나라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■ 지원 규모

3.0조

■ 용자한도 및 금리

용자한도

·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)까지이며, 매출액의 150%이내에서 지원

대출금리

·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.

■ 용자신청 / 접수 및 체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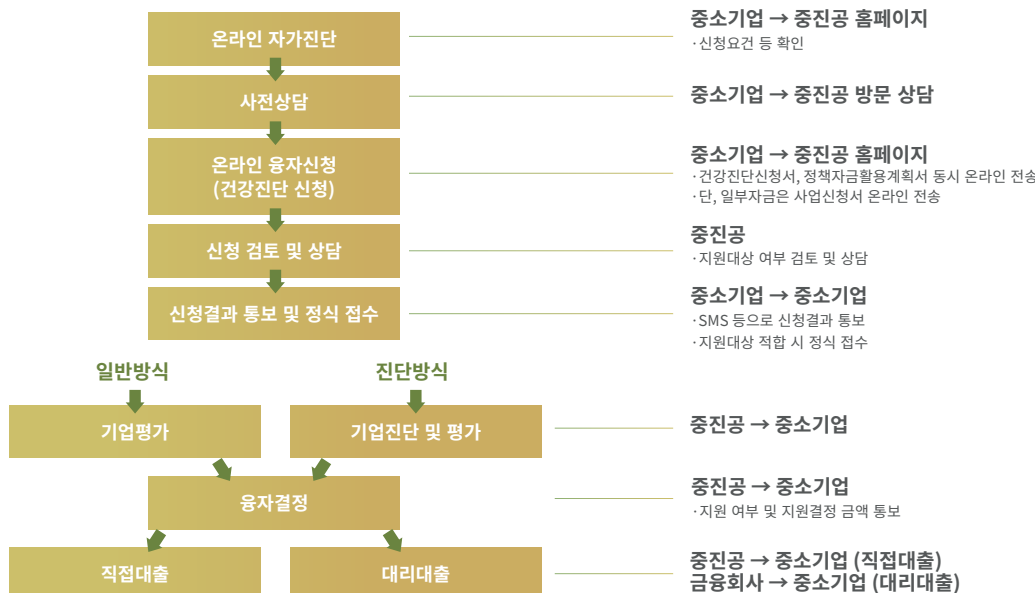
접수시기 예외

-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
-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은 매 격월별(5월, 7월, 9월, 11월) 접수

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·접수하여 운영

- 투융자복합금융자금(성장공유형 대출,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-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)
- 신성장기반자금(협동화 및 협업사업, 고성장(가젤형)기업지원자금)
- 재도약지원자금(사업전환, 무역조정, 구조개선전용)
- 재해중소기업, 일시적경영애로기업,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
- 긴급경영안정(일시적애로) 중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·의원 및 기업 지원은 9.15까지 접수

용자 체계도



중소기업 정책자금

■ 용자대상

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중소기업으로서,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(우선지원)

- 전략산업 : 녹색·신성장동력산업, 뿌리산업, 부품·소재산업, 지역
- 전략·연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바이오산업,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, 물류산업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중소기업으로서,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-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자금별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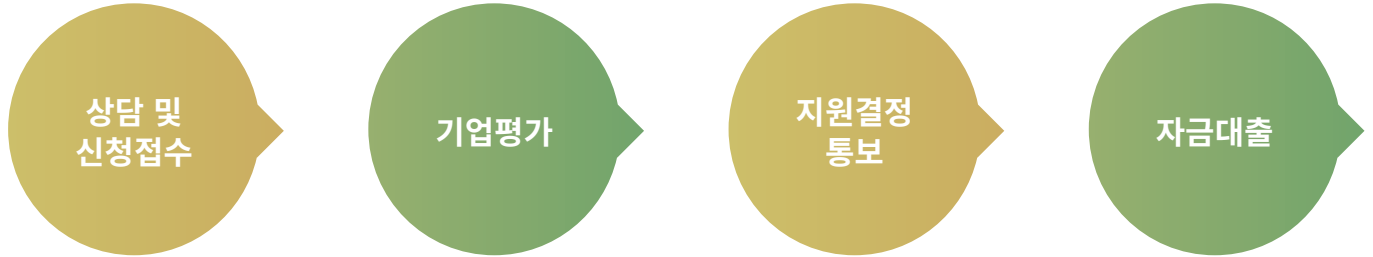
■ 용자 제한기업

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중소기업으로서,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(우선지원)

-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.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용자대상에 포함
- 전국은행연합회의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-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휴·폐업중인 기업. 다만,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
-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
 -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(단,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),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
 -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
 -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(단,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,000억원 이상인 기업)
 -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,000억원 초과 기업
 -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(가젤형)기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, 매출액 1,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1,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
-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(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단,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)
 - 업력 5년 미만 기업,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
 - 『소득세법』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
 - 『중소기업 협동조합법』상의 협동조합
 -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, 재해 중소기업
 -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
 -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,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
 - (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, 매출액대비 R&D투자비율이 1.5% 이상인 기업의 R&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)
- 용자 신청일 현재,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
 - 2년 연속 매출액이 50%이상 감소한 기업
 -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
 -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.0 미만'이고, 3년 연속 '영업활동 현금흐름이 (-)'인 기업
 -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
 -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(CR6) 등급 (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)
-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(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재도약지원자금(사업전환, 무역조정, 구조개선전용), 재해자금은 신청가능)
- 용자 신청일 현재,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(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)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(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(<http://sims.go.kr>)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)
 - 시설자금 :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(비수도권은 50억원) 이상 (단,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)
 - 운전자금 :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, 재해중소기업,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, 수출금융지원자금,사업전환자금, 투융자복합금융자금(성장공유형 대출)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

중소기업 정책자금

■ 용자절차



■ 이의제기 절차

개요

· 정책자금 신청업체 중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, 탈락한 업체의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기회 부여

재심대상

· 기술·사업성 평가 결과, 지원 제외된 기업

재심절차

